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7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제15조의2 신설)	3
2.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및 전대 허용(안 제16조의2 신설 등)	8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37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6.

(3) 회 부 일 : 2024. 9.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제15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 모집절차, 사용처 등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하여 노인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감염병, 응급의료,

모자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예방·관리와 연구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라 사업 수익금과 정부 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2018.3.13.>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이에 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¹⁾ 각종 공

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도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게 되면 제약업체 등이 주요 기부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투명한 기부금 모집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서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은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제도에 따라 접수는 가능하나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는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것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암묵적 강요, 준조세)를 경계하여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

1)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법 제7조제4항),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으므로(법 제18조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법인·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함.

-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업체와의 깊은 이해관계가 있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2.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및 전대 허용(안 제16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u>대부</u> 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 ----- ----- -----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u> 하게 할-----.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u>대부</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대부, 사용·수익</u> ----- -----.
<u><신설></u>	<u>제16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u>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u>같다.</u> <u>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u> <u>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	--

나. 검토의견

- 국유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 허가’,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대부’라 함.

< 국유재산 사용수익과 대부 >

구 분	사용수익	대부
정의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유재산 종류	행정재산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 모든 국유재산)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사용료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현재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 아울러,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전대(轉貸)’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등이 국유재산 대부·사용·수익(전대)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국유재산 사용 대부 전대 등 관련 입법례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암관리법」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